

4단계 BK21 사업 참여요건 검증 매뉴얼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

(BK21사업팀, '22.3.24.)

□ 추진 근거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1.6.))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중략)...

⑧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중략)...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중략)...

제14조2(산학협력 전담인력)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중략)...

□ 참여요건 검증 방법 및 절차

○ 대학별 교육연구단(팀) 실무자 및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참여인력 적격 여부 확인必

※ 참여요건 부적격자에 대한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 지급 건 확인 시, 환수 조치 예정

보관증빙자료 구비(발급 기준일 확인)*

사업 참여 시	
구 분	발급 기준일
참여대학원생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	
구 분	발급 기준일
참여대학원생	매년 2월 28일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4단계 BK21 사업 참여 시 4대보험 가입 여부(타기관 미가입 상태) 및 참여기간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타기관 미가입 상태)을 확인하되, '운영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3항 각 호 및 4항, 제14조(신진연구인력) 5항([붙임] 참고)'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 구비必

* 사업 참여 시, 참여인력별 발급 기준일에 보관증빙자료를 구비해야 참여 가능

사업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기준일(2.28.)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기준일자 이후, 그 주에 발급받은 증빙자료도 인정

** 사업기간 중 참여를 종료하는 경우, 참여 종료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요건 확인 및 종료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팀)장 사유서(자유양식)를 함께 구비

< (참고1) 참여인력별 보관증빙자료 구비 목록 >

구 분	보관증빙자료	비 고
참여대학원생	- 전일제 증빙자료 ((참여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학적부 (학적시스템 캡처화면 가능) ※ BK21 사업 수행학과(부) 소속**, 지도교수***, 재학연한, 학기등록 여부**** 확인 - 참여인력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BK21 홈페이지 자료실 47번 게시글 [붙임3] 양식 참고) - 타과제 참여 확인서(자유양식) : 해당 시 구비	
신진연구인력	- (참여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인력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BK21 홈페이지 자료실 47번 게시글 [붙임3] 양식 참고) - 타과제 참여 확인서(자유양식) : 해당 시 구비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국내 체류必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인력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BK21 홈페이지 자료실 47번 게시글 [붙임3] 양식 참고) - 타과제 참여 확인서(자유양식) : 해당 시 구비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국내 체류必

- *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유학비자(D-2) 또는 외국인등록증(앞뒤) 사본으로 대체 가능(유학비자 여부 및 만료(체류)기한 확인, 유학비자 외 다른 종류 비자(연수(D-4), 거주(F-2) 등)인 경우 전일제 증빙자료 함께 구비)
- ** (혁신인재 양성사업) BK21 사업을 수행하는 학과(부)/전공/협동과정 또는 융합전공 소속임이 확인되어야 함
- *** (공동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가 동일 학과인 경우, 참여교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함께 구비, 공동지도교수가 BK21 미참여 학과인 경우 미참여 학과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함께 구비
- **** (박사 수료생) 수료 후 연구생 등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참여교수는 별도 관리 매뉴얼 참고 (BK21 홈페이지 자료실 47번 게시글)

< (참고2) 참여인력 관련 FAQ (Q&A자료집(3rd), '22.3.) >

1. 전문연구요원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신진연구인력)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4조 5항에 따라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경우 임용 시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가 대학 내 연구소 소속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소와 교육연구단(팀) 간의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 체결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1항에 따라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인 경우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신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타 연구소 및 타 산업체 소속 전문연구요원은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연구 활동을 위해 병무청에서 인정한 근무지 변경으로 교내 연구소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 소속은 학과(부)여야 함)

2.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미입국 참여대학원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에 한해(개인사유 등은 해당 없음) 정상적으로 학기 등록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를 구비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국내로 입국 시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앞, 뒤 사본(D-2비자 여부 및 만료기한 확인, 유학비자 사본 가능)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 및 단순 해외 체류는 해당 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이 외 사항은 Q&A 자료집(3rd) 참고 (BK21 홈페이지 자료실 49번 게시글)

붙임

관련 규정[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21.6.)]

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별표2】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의 신청학과(부) 소속 지도학생	-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참고)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 사항
자격증/명의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대여	-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고등교육법상 (행정) 조교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 시간강사	-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타 프로젝트 참여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2. 참여요건 예외사항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종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